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341232 판결 [구상금 청구의 독촉사건]

전 문

원고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강동원, 노영실, 한다윗

피고A

변론 종결2024. 10. 31.

판결 선고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2024. 7. 24.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조정현

별지